

소규모항 개발의 중요성

종합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소규모항도 어항법으로 지정해야

신 문 섭 / 군산대학교 공과대학 토목환경공학부 교수

- 최근에는 어업후계자의 감소 및 어업인력의 고령화로 어촌지역은 활력을 잃고 있다.
- 따라서 어촌지역의 소규모항 개발은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하다.
- 그 기능도 다양화하여 기본시설과 기능시설은 물론 생활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 기르는 어업에 필요한 종묘생산시설·양식용 사료보관시설, 활어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축양시설, 가공시설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 어항주변의 생태계보전을 위하여 어항내의 해수교류촉진, 수산자원의 생식과 번식이 가능한 방파제 및 호안개발도 필요하다.
- 특히 전체 어항 중 어장과 어촌을 연결하여 주는 소규모항이 82%를 차지하고 있으나 어항법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관리와 개발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 연안과 도서에 설치되어 있는 어항은 어항법으로 지정되어 비교적 어항정비가 잘 되어 있는 지정어항이 있고, 비지정어항으로서 소규모항을 생각할 수 있다.

지정어항이든 비지정어항이든 어항은 어장과 어촌을 연결하여 주는 공간이다. 특히 비지정

어항인 소규모항은 어촌의 생활근거지와 지정 어항의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항 개발은 개발비용이 적게 투자되고 있으며 어촌에는 생활관련 공공 시설이 부족하고 정비도 되어있지 않아 많은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기획특집 ② 육지소규모항 개발에 바란다

더욱이 최근에는 어업후계자의 감소 및 어업인력의 고령화로 어촌지역은 활력을 잃고 있다. 따라서 어촌지역의 소규모항 개발은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하다. 그 기능도 다양화하여 기본시설과 기능시설은 물론 생활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 기르는 어업에 필요한 종묘생산시설·양식용 사료보관시설, 활어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축양시설, 가공시설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어촌·어항주변에는 수산물유통과 가공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오페수, 생활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어항내의 해수교류촉진, 수산자원의 생식과 번식이 가능한 방파제 및 호안개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어항은 어항법으로 지정된 전국의 지정어항은 제1종 69개항, 제3종 36개항, 제2종 316개항 등 421개항이며 어항법상의 지정어항은 아니지만 전국 연안에 산재되어 있는 어촌의 소규모항·포구는 약 2,231 여 개소로 이중 소규모항으로 관리되고 있는 항·포구는 육지소규모항 963개소, 도서소규모항 858개소의 총 1,821 개소이다. 전체 어항 중 소규모항이 82%를 차지하고 있어 소규모

어항개발의 중요성을 더해 주고 있다.

다양한 역할 수행토록 계획되어야

어항의 계획은 어촌지역 경제활동의 핵심기반시설로서 생산활동·유통기지로서 역할(예: 어획물 보관, 출어준비, 어선의 안전정박, 수산가공), 어촌지역사회와의 역할(어촌주민의 생활기반, 어업관련산업을 위주로 하는 지역경제발전 기반, 어촌과 외부를 연결하는 교통), 해양자원을 이용한 해양관광장소로서 역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해역에서 생물자원을 포획·생산하고 판매하여 수익금으로 생활하는 장소가 어촌이므로 어촌을 활력있고 풍부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소규모 어항주변에 해역의 생물·물리특성에 적합한 어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①보호·육성초 ⑥착저초 ②산란초 ④유도·체류어초 ⑤육성제 ①호름과 조류 제어제 ⑧도류제 ⑩정착립 시설, 용승류 발생공 등에 의한 어장환경조성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어장환경조성 기술개발을 위한 일환으로 인

공어초의 개발은 우선 '왜 어초주위에 어폐류가 모이는가?'라는 집어(위집)기능에 관한 종래 학설을 정리하여 어류와 해역특성에 알맞는 인공어초를 개발한다.

우리나라 천혜의 자원인 긴 해안선과 기상, 해상, 해저 등 물리적인 조건과 생물조건을 고려하고 천연초, 어장이용현황, 어업동향, 유통 등 어장조건을 명확히 하여 인공어초의 위치, 규모, 구조, 배치 등을 검토한 대규모적이고 경제적인 어장환경조성 사업과 치어방류 기술개발 등을 실시하여 소규모항 주변에 어장이 형성되어 생물자원의 포획·생산이 안정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어촌·어항주변에는 수산물유통과 가공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오페수, 생활폐수로 인하여 생물종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어항주변의 생태계보전을 위하여 어항내의 해수교류촉진, 수산자원의 생식과 번식이 가능한 방파제 및 호안개발도 필요하다. 특히 전체 어항 중 어장과 어촌을 연결하여 주는 소규모항이 82%를 차지하고 있으나 어항법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관리와 개발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